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5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민의원)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81조의2에서는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특허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3 및 제8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건의 개정안은 특허료 또는 등록료¹⁾의 납부 기간 경과로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회복과 관련하여,

① 특허권 등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면서 일정기간²⁾ 내에 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하고(특허법 개정안 제81조의3제1항,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84조제1항),

②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³⁾(특허법 개정안 제81조의3제2항·제4항·제7항, 제87조제2항제4호, 실용신안법 개정안 제21조제1항제4호,

1) 「특허법」의 경우 특허료,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등록료

2)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을 말함.

3) 특허법 개정안 제81조의2제1항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서 ‘보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84조제2항·제4항, 제90조제2항제4호)하는 한편,

③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이에 더하여 디자인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신청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7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u>정당한 사유</u> 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u>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 <u>고의</u> ----- ----- ----- ---- <u>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낼</u> -----. <u><단서 삭제></u>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u>내거나 보전한</u>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 <u>낸</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	④ ----- -----

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u>내거나 보전한</u>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u>납부나 보전</u>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u>내거나 보전하였을</u> 때 5. (생략) ③·④ (생략)	----- --- <u>낸</u>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u>납부</u> ----- -----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냈을</u>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하였을 때</u>	4. ----- ----- <u>-냈을-</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u>정당한 사유로</u>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 ----- <u>고의</u> ----- ----- ----- <u>경우를 제외하고는</u> <u>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등록료의 3배를</u> <u>낼</u>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한</u>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 <u>낸</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한</u>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④ ----- ----- ----- ----- <u>낸</u> ----- ----- -----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신설>	----- -----.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하였을 때</u> 5. (생략) ③ (생략)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냈을</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3건의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검토의견은 특허법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함.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4)에서는 특허료 미납이나 미보전으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4)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1항도 동일함.

5) 특허법 개정(’22.4월 시행)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참고자료 1. 특허료 납부 및 특허권 회복요건 관련 개요)

그런데 특허권 회복요건인 ‘정당한 사유’⁶⁾를 인정받는 비율이 약 15.6%에 불과하여 회복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특허권 회복신청자 중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4.6%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수혜대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⁷⁾도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특허권 회복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

[표 2] ‘정당한 사유’(제81조의3제1항)로 특허권 회복 신청 현황(’22.4.~’24.12.)

출원인 유형	회복 신청건(비율)		
	인정(비율)		불인정(비율)
대기업	3 (0.7%)	0 (0.0%)	3 (100.0%)
중견기업	22 (4.8%)	1 (4.5%)	21 (95.5%)
중소기업	236 (51.1%)	33 (14.0%)	203 (86.0%)
공공연구기관	4 (0.9%)	1 (25.0%)	3 (75.0%)
대학교	21 (4.5%)	0 (0.0%)	21 (100.0%)
외국법인·개인	15 (3.2%)	6 (40.0%)	9 (60.0%)
내국개인	155 (33.5%)	30 (19.4%)	125 (80.6%)
기타(내국법인)	4 (0.9%)	1 (25.0%)	3 (75.0%)
비영리기업	2 (0.4%)	0 (0.0%)	2 (100.0%)
전체	462 (100.0%)	72 (15.6%)	390 (84.4%)

자료: 특허청

6) 개정 당시 특허청은 권리회복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 출원인의 지병, 특허고객상담 센터의 오안내, 특허료(등록료) 납부 오류 등을 ‘정당한 사유’의 사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7) ’23년 4월, 한국과학기술원의 ‘암세포 약물 특허 및 화석연료 반응 후 CO₂ 포집 특허’ 소멸사례 발생

이에 개정안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면서 특허료 추가 납부기간을 연장(사유 소멸 후 2개월 이내→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 후 1년 이내)하는 대신 원 특허료의 3배를 내게 함으로써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임(현행과 개정안의 상세비교는 [표 4] 참조).

현행 특허권 회복제도를 통한 특허권 회복 현황 및 이용 대상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 회복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중요 특허가 납부시기를 놓침으로써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3년 5월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의 권리회복 요건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완화하였으며,⁸⁾ 미국의 경우 특허권 회복요건을 ‘피할 수 없는’ 또는 ‘비의도적’ 사유로 정하고 정하고 있음.

8) 일본의 경우 소멸특허권의 회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요국의 산업재산제도에 비해 소멸특허권의 회복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을 개정의 논거로 제시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고의로 소멸시킨 경우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특허법상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사유’ 요건 검토」, 2023.12., 연구그룹 로랩(주), 특허청 정책연구보고서, p. 51).

[표 3] 주요국의 특허료 추가납부 및 특허권 회복요건 현황

구분	일본	미국
사유	고의가 아닌 경우 *’23.5월 이전에는 정당한 사유	‘피할 수 없는’ 또는 ‘비의도적’
납부기간	o 추납기간(납부기간~6개월) 만료일~1년	o 추납기간(납부기간~6개월) 만료일~2년
비용	o (특) +¥212,100(≒194만원) ※ (실) ¥2.2만/(상) ¥8.7만/(디) ¥2.5만	- ‘피할 수 없는’: +\$700 - ‘비의도적’: +\$1,640(≒208만원)

자료: 특허청

다만, 개정안은 특허권 회복을 위한 납부료를 ‘원 특허료’에서 ‘원 특허료 3배’로 상향⁹⁾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 회복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나,

경제적인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현행 제81조3의 제3항¹⁰⁾에 따른 특허권 회복의 경우 ‘고의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보다 낮은 ‘원 특허료 2배’를 납부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점([표 4] 참조)에서 합리성이 부족한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납부금액에 관한 해외사례([표 3] 참조) 등을 참고하여 특허권 회복

9) 제81조제3항에 따른 특허권 회복에서는 3개월간 원 특허료 2배 납부로 규정하고 있어, 1년간 회복을 규정한 개정안에서는 3배 납부로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10) 「특허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제도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특허권 회복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제81조의3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 미납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은 현행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설정등록료 미납 특허권 회복과 적용되는 상황이 중첩(제81조의3제1항 적용대상은 제81조의3제3항 적용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¹¹⁾되는 부분이 있어 수범자가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논의 시 법률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4]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제81조의3제1항		제81조의3제3항 (현행)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포기간주된 <u>특허출원 및 특허권</u> (<u>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미납부</u>)		포기간주된 <u>특허발명의 특허권</u> (<u>연차등록료 미납부</u>)
회복요건	정당한 사유	고의가 아닌 경우	-
회복 신청기간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경과 후 ~ 사유소멸 2개월 (최장: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1년)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경과 후 ~ 1년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경과 후 ~ 3개월
납부 특허료	원 특허료	원 특허료의 3배	원 특허료의 2배

11) 현행 및 개정안 제81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은 설정등록료(등록 시부터 3년간 특허료, 특허출원자 부담) 또는 연차등록료(설정등록료 종료 다음 해부터 매년 1년씩의 특허료, 특허권자 부담)를 정당한 사유(현행) 또는 고의 없이(개정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81조의3제3항은 사유에 관계 없이 특허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함.

그 밖에 안 제81조의3제2항 등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자” 등으로 일괄개정하는 것은 보전기간의 경과와 함께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전기간 경과 이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보전’이 아니라 ‘특허료 납부’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법문의 정비로 보이고,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 디자인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신청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84조제7항 신설)하는 것은 「특허법」과 동일하게 절차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요 특허가 실수로 소멸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 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권 회복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특허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권리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는 대신 납부 금액을 인상하되, 납부 금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게 되면 과도하게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으므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요건 없이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81조의3제3항은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삭제하며, 그 외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

수정주요내용

가. 제81조의3 제목을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으로 함(안 제81조의3 제목).

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신청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81조의3제1항).

다. 현행 제81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81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1조의3의 제목 중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를 “특허출원과”로, “회복”을 “회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허권자가 고의로”를 “특허권자가”로,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료를 낸 자는”을 “정해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특허출원을 포기하지”를 “특허출원은 포기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특허료를”을 “정해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본문에”를 “제1항에”로, “납부”를 “회복”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을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1조의3(<u>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u> 등)	제81조의3(<u>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u> 등)
①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u>특허권자가</u>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u>특허권자가</u> <u>고의로</u> ----- ----- ----- --- <u>아니한</u> 경우를 <u>제외</u> 하고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낼----- ----- <u>. <단서 삭제></u>	① ----- ----- ----- <u>특허권자가</u> ----- ----- ----- <u>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

경우 그 특허권자
 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
 료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제79조에 따
 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특허출
 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
 간 또는 보전기간
 이 지난 날부터 특
 허료를 내거나 보
 전한 날까지의 기
 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

④ -----

 -----특
 허료를 낸-----

④ 제2항에-----

 --정해진 금액을
 낸-----

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
로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특허출
원된 발명 또는 특
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
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
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다.

⑥ (생략)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본문에--
--납부-----

-----.

-----.

⑤ -----

-제2항에-----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제1항에-----
회복-----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u>특허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에 관한 적용례</u>) 제 81조의3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 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 용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 안과 같음) 제2조(<u>특허출원과 특허 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u>)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의 제목 중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를 “특허출원과”로, “회복”을 “회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를 “특허권자가”로,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을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을 “정해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특허출원을 포기하지”를 “특허출원은 포기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을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본문에”를 “제

1항에”로,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을 “회복”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4호 중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해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3(<u>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u>)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u>특허권자가</u> <u>정당한 사유로</u>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u>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81조의3(<u>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u>) ① ----- ----- ----- <u>특허권자가</u> ----- -----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u>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u>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u>특허출원을 포기하지</u>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	② ----- <u>정해진 금액</u> 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 <u>특허출원은 포기</u>

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되지-----

-----.

<삭 제>

④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을 낸-----

-----.

⑤ -----
-----제2항에-----

—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회복-----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
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정
해진 금액을 냈을---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